

제7장 신용장 없는 무역거래와 구상무역

최근 신용장(commercial L/C) 방식의 비중이 1994년까지만 해도 60%가 넘었으나 지금은 30%대에 그쳐 있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석유화학·철강·자동차 등 수출 주종품목의 수출 패턴이 점차 D/A, D/P 등 無信用狀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자·자동차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 앞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므로 신용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기계류·철강 등 여타 업종에서도 수출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상호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신용장 개설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신용장 방식보다는 無신용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구상무역(countertrade)이란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결제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인 점에서 연계무역(link trade)이라고도 한다. 구상무역의 당사자는 둘 이상이며 2개국 이상 관련되어 물품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 서비스를 대상으로 매우 다양하게 추진된다.

구상무역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세계 무역거래액의 1/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믿을 만한 통계의 부재는 각국 정부가 쌍무주의, 상호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상무역에 관한 통계를 따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상무역은 오늘날 수입결제용 外換이 부족한 나라의 무역거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과거 거래대금을 硬貨(hard currencies)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오늘날의 개발도상국들이 구상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無신용장 거래

무신용장 거래에는 선적서류를 받거나 현물의 인도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書類交換渡 조건(cash against documents: CAD)과 現金交換渡 조건(cash on delivery: COD)이 있지만, 은행을 통해서 하는 D/P와 D/A 거래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 전자는 'Documents against Payment'로서 수입상이 지급을 하여야 推尋은행이 서류를 인도하는 一覽出給式이다. 반면 후자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로 수입상이 환어음을 인수하여야 추심은행이 서류를 인도하는 것으로 이는 期限附 어음거래가 된다. D/P, D/A 거래는 수출상이 선적을 완료하고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수출대금이 결제된다. 이 경우 은행은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위임받은 추심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D/P, D/A 거래에 대하여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ICC Publication No.522)이 적용된다.

1. 무신용장 거래의 종류

무신용장 거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대신 신용장과 같이 은행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오랜 거래관계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 재무건전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이

루어지는 거래이다.

가. 대금교환도 방식

상품, 또는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결제하는 방식이다.

(1) COD(Cash On Delivery: 상품인도 결제방식)

-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상품과 相換하여 현금으로 결제한다.
- 수출자가 상품선적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국 소재 자신의 대리인 또는 지사에게 송부하여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업자가 검사 후 상품을 인도받은 후 대금을 결제한다.

(2) CAD(Cash Against Document: 서류인도방식)

상품 선적 후 수출국에서 서류와 상환하여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출업자가 선적 후 선적서류 등(선화증권, 보험서류, 상업송장 등)을 수출국 소재 수입업자의 대리인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한다.

Cf. 송금환(Remittance Exchange)과 추심환(Collecting Exchange)

국제간의 대차관계를 결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먼저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과,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 앞으로 먼저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는 서류(환어음)를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를 '送金換 또는 順換'이라고 하고 후자를 '推尋換 또는 逆換'이라고 한다.

나. 송금방식(Remittance basis)

송금(환)방식은 지급지시 방법에 따라 외국환은행간 지급지시에 의한 방법과 송금환 수표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1) M/T(Mail Transfer)와 T/T(Telegraphic Transfer)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외국환 은행에 입금시키면서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 때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전신으로 송부할 경우를 T/T(전신환),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를 우편환(M/T)이라 한다. 따라서 M/T와 T/T의 차이는 기간의 차이이며, 곧 그로 인한 이자의 차이가 발생한다.

(2) 송금환수표(Demand Draft: D/D)

수입자가 수입지 외국환은행에 대금을 지불하고 발급받은 송금환 수표(Demand Draft)를 직접 수출자에게 보내어 수출자가 당해국의 외국환은행에서 현금화하는 방법이다.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우송함으로 도중에 분실·도난의 우려가 커 소액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Cf. CWO(Cash With Order)

주문불 방식의 선급조건을 말한다. 수입자가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M/T, T/T, 송금환수표 등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회사간 거래나 소액거래(견본품 등)에 주로 쓰인다. 주문불 방식의 선급조건이라는 점에서 상품,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 지급하는 COD, CAD와 구분된다.

다. 추심결제 방식(D/A와 D/P)

(1)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도조건)

수출상(즉, 의뢰인: Principal/Drawer)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구비된 서류에 '기한부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자기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을 통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앞으로 그 어음대금의 추심을 의뢰한다.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이를 수입상(즉 지급인: Drawee)에게 제시하여 그 제시된 어음을 일람지급 받지 않고 인수만 받음으로써 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지급받는다.

(2) D/P(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도조건)

수출상(Principal/Drawer)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구비된 서류에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자기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을 통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앞으로 그 어음대금의 추심을 의뢰한다. 추심은행은 수입상(Drawee)에게 그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금액을 지급받고 서류를 인도한다.

2. 청산결제와 팩토링

가. 청산결제(open or current account)

매도인, 매수인이 일정기간을 정하고 대등액을 차감하고 그 잔액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거래가 빈번한 회사끼리 선적 시마다 대금결제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자는 계속 상품을 선적하고 일정기간에 한 번씩 누적된 대금을 결제하는 신용거래이다.

Debit note와 Credit note

차변표(debit note: D/N)는 전표의 발행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표시한 전표이다(→돈 받을 것, 상대방의 부채). 미정산대금의 청구 또는 누락금액의 청구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차변계정에 기재한다.

반면 대변표(credit note: C/N)는 전표의 발행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계정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과 금액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전표이다(→돈 줄 것, 상대방의 자산). 대리점 수수료의 지급, 또는 수출물품의 수량부족, 송장금액의 과다 발행시 이용된다.

매분기마다 이들을 합산하여 정리한 것이 계산서(statement of account)이다. 계산서에 의해 지급계정만큼 어음을 발행하든지 다음 신용장 개설시 신용장금액을 증액 개설하여 계정을 청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예컨대, debit US\$100 to your account: \$100을 차기하다. 또는 credit US\$100 to your account: \$100을 대기하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수표 등으로 송금을 받았다면 상대방 계정의 자산이 올라가므로 대기(Credit)해야 한다. 반면 유상샘플을 보냈다면 상대방 계정의 부채가 올라가므로 debit 해야 한다.

나. 팩토링(Factoring)

제조업자(Client)가 구매자(Customer)에게 상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Factor)에게 일괄 양도함으로써 팩토링회사로부터 구매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지급보증, 매출채권의 관리, 회계업무(accounting), 대금회수 및 전도금융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들어 국제적인 영업망을 갖춘 팩토링회사들이 수출자 및 수입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로서 수출국 팩토링회사(수출팩터: Export Factor)가 수출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을 공여한다. 수입국 팩토링회사(수입팩터: Import Factor)는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신용승인(credit approval) 등 팩토링 서비스를 수행한다.

求償貿易(C/T)

구상무역(counter trade)은 2차 대전 후 동구 사회주의(COMECON) 국가를 중심으로 하나의 무역관행으로 정착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사회주의 국가 域內거래 뿐만 아니라 西方과의 무역거래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구상무역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연자원을 생산하는 개도국들이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국내 경제개발에 필요한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구상무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표면상으로는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면서도 그와 대립된 개념인 구상무역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도국들로부터 농산물, 천연자원을 수입할 때 구상무역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경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과 교역을 할 때에도 구상무역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 당국과는 남북경협합의서에 의하여 청산거래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구상무역의 구체적인 동기를 살펴보면, ▷외채누적, 국제수지 악화에 따른 수입결제용 외환의 부족,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동, 선진국의 非關稅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시장의 확보, ▷선진 기술·노하우의 도입 및 생산시설의 개량, ▷하이테크 장비의 수출촉진 등을 들 수 있다. 거래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장에는 구상무역을 중개·알선하는 전문거래상도 다수 활약하고 있다.

1. 구상무역의 종류

구상무역은 수출과 수입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두 개 이상의 契約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상품 및 기술을 매매하는 계약과 그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현지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구상무역은 수출 또는 수입계약에 연계무역의무(linked trade obligations)가 포함된 무역거래를 의미한다.

가. 바터(barter) 去來

바터는 두 무역당사자가 현금의 수수 없이 동등한 가치의 물품을 직접 교환(swap)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대만에 한국산 과일을 수출하고 같은 금액의 현지 바나나를 수입해 오는 방식이다. 따라서 서로 교환하는 물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격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게 거래기간을 1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바터 거래에는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으며 하나의 계약서로 양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품목, 수량, 가격, 품질, 포장, 인도조건, 운송방법 등을 정한다.

양측의 수요가 일치하는 경우란 드물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현금결제 를 요하는 병행계약(parallel contract)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계약을 분리하면

계약만기와 물품 인도시기에 융통성을 살릴 수 있고 제3자에게 구매청구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나. 對應購買(counterpurchase)

대응구매는 間接補償(indirect/commercial compensation)이라고도 한다. 어느 나라에 상품을 수출하고 상품인도후 일정 기간내(통상 1년이며 5년을 넘지 않음) 수출액의 일정 비율(통상 10~100%이지만 100% 이상인 경우도 있음)로 그 나라에서 생산된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때 수출입거래는 신용장을 포함한 정상적인 외환거래 방식으로 결제한다. 대응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상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대응구매 의무 및 품목을 명시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프로토콜(protocol, framework agreement)로 연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對應購買에 있어서 수입과 수출거래는 상호 독립적이다. 그러므로 프로토콜에서는 대응구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약금, 유수 은행의 이행보증 등의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 還買(buyback)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구상무역의 한 형태로 直接補償(direct compensation)이라고도 한다. 어느 나라에 기계장비, 기술을 수출하고 그 장비와 기술로 생산된 물품(結果財: resultant products)을 일정 비율 이상 수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거래는 단순한 무역거래에 그치지 않고 국제 기업간의 직접 또는 합작투자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환매는 수출업자가 제공한 설비·기술로 만든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구매품목의 제한이 없는 대응구매와 다르다. 주로 플랜트류를 대상으로 하므로 對應購買와는 달리 금액도 거액에 달하고 생산이 개시되어 수출대금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매 형태의 구상무역이 선호되는 이유는 수입국은 국제수지상의 부담없이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제품의 해외판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선진공업국은 대규모 플랜트를 수출하면서 현지 저임금을 이용한 저가의 공산품 또는 주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매거래 계약은 플랜트 수출과 製品還買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계약으로 나누고 이를 프로토콜로 연결한다. 이는 플랜트 수출 및 건설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품 환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 相計(offset) 거래

상계는 다른 구상무역과는 달리 주로 선진국-개도국 또는 선진국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이다. 60년대 이후 고가의 군사장비, 대형 컴퓨터·통신 시스템의 수출에는 으레 선진기술의 이전, 現地부품의 구매, 免許생산, 공동생산 등의 의무가 수반되었다. 이는 하이테크 장비 수출국이 수입국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케 하기 위해 비롯되었다. 오늘날에도 하이테크 장비의 판매경쟁이 격화되면서 선진국 상호간 또는 對개도국 거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도국 정부가 민간 항공기, 전자통신장비 또는 군사장비를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때에는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 기술이전, 교육훈련, R&D 지원, 현지 공동생산(co-production), 면허생산(license production), 현지 기업에 대한 하도급(sub-contracting), 현

지 상품·서비스의 우선구매, 국내생산비율의 달성 등을 의무화한다.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OECD 국가에서도 공공부문의 물자구매시 상계거래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4년 이후 방산물자를 구매할 때 이를 적용하고 있다.

마. 清算去來(clearing arrangement)

청산거래는 쌍무 청산거래협정(bilateral clearing agreement)을 체결한 교역 당사국의 은행에 청산결제계정(clearing account)을 개설하고 일정 기간(보통 1년) 서로 거래를 한 후 채권·채무 과부족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청산기간중 두 나라의 수출업자는 각기 자국 은행으로부터 국내 통화로 수출대금을 지급받는다. 청산통화는 스위스 프랑, 美 달러등의 硬貨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산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수출초과를 보이는 나라는 상대국에 무이자의 무역신용을 공여하는 셈이 되므로 청산거래협정에서 무역불균형의 振幅(swing)을 미리 정해둔다. 따라서 스윙이 두 나라 연간 교역목표량의 30%를 초과하는 등 심한 무역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 수출초과국은 채권초과액이 스윙폭 이내로 줄어들 때까지 채무국으로의 상품수출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청산거래협정에 있어서는 스윙 한도초과 금액에 대한 금리 및 청산기간 종료후의 정산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며, 보통 美 달러 등 청산통화로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안에 정산하도록 한다. 양국의 금융기관이 주체가 되어 은행간 청산거래협정을 맺는 경우도 있다. 이는 환거래약정(correspondent agreement)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래처가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는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후에 상호정산하는 방식이다.

청산거래는 일정 기간 단위로 채권·채무계정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自國通貨 베이스로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대우구매 물품의 처분에 따른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수출품 가격을 올릴 필요도 없다. 구매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포괄적 구매 리스트에 올랐으면 일일이 상대방 국가의 수입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청산계정이 설치된 양국의 위탁은행이 수출입거래를 파악하여 교역금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작업이 쉽지 않고 상대국의 채무불이행, 협정 종료후의 채권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 스위치 去來(switch trading)

스위치 거래는 清算去來協定에 입각한 특수한 무역거래방식이다. 양국 청산계정의 채권·채무에 과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제3의 거래자(switch trader)를 개입시켜 兌換가능한 통화로 상호 결제하는 것이다.

청산거래에 있어서 수출초과국의 청산결제은행은 장부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산기간 만료 전에는 이를 상대국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때 두 나라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관여시켜 청산결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즉 채무국은 기존 청산거래협정에 입각하여 수출초과국(債權國)에 제3국의 물품을 채무국 명의로 수출하고(채권-채무국간에 무역균형 달성), 채무국은 물품대금을 제3국에 硬貨로 지급하는 것이다.

또는 수출초과국의 채권을 제3국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브라질이 폴란드와 청산거래협정을 맺고 브라질은 커피, 폴란드는 공구류를 각각 상대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브라질의 폴란드에 대한 커피 수출액이 공구류 수입액을 초과할 경우 브라질은 폴란드에 대한 채권초과분을 對폴란드 채무가 있는 독일의 수입업자에게 할인매각할 수 있다. 런던, 암스텔담, 주리히 등지의 국제시장에는 이러한 거래를 알선하는 스위치 딜러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 이

들은 청산거래 협정국의 중앙은행 등에 접근하여 스위치 거래의사를 타진한 후 거래를 성사시키고 중개수수료(할인액)를 받는다.

2. 구상무역의 법적 측면

오늘날 구상무역은 하나의 경제현실로서 서방 선진국 법률제도의 외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거래는 주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무역관련법규의 규제를 받는 실정이다.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무역거래 관련법의 조화와 통일¹⁾을 기하기 위하여 1992년 「求償貿易에 관한 法務指針」(Legal Guide on International Countertrade Transactions)²⁾을 제정하고 각국에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구상무역에 적극 관여한다든가 이를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對外貿易法 및 동 시행령상 ‘대금결제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특정거래 형태(동 시행령 28조 1항 3호)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 규정 제3-4-1조 2항 7호 연계무역³⁾). 구상무역은 종래 特殊信用狀⁴⁾ 방식에 의한 수출입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환급보증 또는 이행보증을 조건으로 하였다. 그러나 1993년 5월 당시의 통상산업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특수신용장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바터 거래를 허용하고 일반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의 자유화를 도모하였다.

가. 契約書의 검토

여기서는 구상무역 계약서에 규정할 사항을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구상무역 계약서는 수출, 수입이 연계되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일반 무역거래에 비해 다소 복잡하다. 계약서의 내용은 구상무역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서두에 계약체결일

- 1) 유엔 총회는 1966년 12월 17일 국제무역거래가 폭넓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무역거래법의 발전적인 조화와 통일(progressive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을 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 특히 개도국 국민의 이익을 유념할 것을 결의(총회결의 2205(XXI)호)한 바 있다.
- 2) UNCITRAL의 웹사이트에서는 구상무역에 관한 범무지침의 목차와 개요를 소개하고 있다. <<http://www.uncitral.org/english/texts/sales/lgcounte.htm>> 동 지침은 각종 다양한 구상무역을 수행하는 데 따른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동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당사자들의 형편에 맞게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3) 연계무역이더라도 ▷수출·수입계약이 하나로 작성되거나 별도로 작성된 경우로서 상호 관계가 있는 경우 ▷수출입대상품목의 가격차이가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인정하는 방식(외국환거래규정 제5-6조 이하에 규정된 상호계산 방법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앞 신고사항임)에 의하여 상계되어지는 경우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는 거래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 4) 連繫貿易에 수반되는 특수신용장은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 ① Back-to-Back L/C : 수입을 위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 외국의 수출상이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하는 신용장을 발행해야만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수입신용장이 유효하다는 條件附 신용장을 말한다.
 - ② Tomas L/C : 장차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保證書의 제출을 조건부로 하는 신용장이다.
 - ③ Escrow L/C :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受益者 명의의 계정에 공탁하였다가 그 수익자가 原신용장 개설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 결제에만 사용토록 한 신용장이다.

(effective date)과 당사자, 주된 사무소를 표시하고 계약의 목적·동기 등을 기술하며 본문에서는 거래방식, 거래대상 물품과 수량, 가격, 표시통화, 물품 인도시기 및 방법, 계약서 변경방법 등을 규정한다.

東歐圏의 거래 상대방은 여전히 대외무역기관(Foreign Trade Organization: FTO)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관은 통상 품목별로 特化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는 다수의 FTO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1) 바터 去來

단순 바터 거래인 경우 보통 한 통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本文에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하고 현금결제를 최소화함을 명시한다.

(2) 對應購買

이 경우에는 수출계약서와 관련하여 대응구매 계약을 체결함을 표시하고 대응구매 의무와 기간, 대상품목, 대응구매 이행의 입증방법(예: 관계당국이 발급하는 letter of discharge), 불이행시의 違約金 지급 또는 이를 보장하는 은행의 보증서의 제출을 명시한다. 대응구매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대상품목을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자유선택 조항(free choice clause)을 삽입하고, 대응구매 기간을 1년 이상 여유있게 잡아두는 것이 좋다.

(3) 還買 또는 直接補償

환매 계약서는 별도의 생산설비·기술수출 계약서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생산을 담당하고 그 생산물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한다는 약정을 포함한다. 생산과정에서 수입자가 원재료 및 시설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산개시후 공급자가 받게 될 몫에서 그 비용을 공제한다. 환매는 공급자가 생산설비의 건설, 생산품의 디자인, 품질 기타 사양을 책임지므로 생산품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나오더라도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생산공장의 출입 기타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를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4) 相計去來

상계거래는 흔히 상계거래 제안서(offset proposal)에 대해 양 당사자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MOU는 외국 공급자의 의무사항(direct and indirect offset)을 명시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의무이행의 적격성(eligibility) 및 가액산정(evaluation)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통상 미이행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계거래 이행보증서(offset performance bond)를 징구하고 있다.

(5) 清算去來

쌍무 청산거래협정에서는 兩國 중앙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의 清算決濟計定の 개설, 청산통화의 지정, 청산기간 및 스윙 한도의 설정, 스윙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금리, 채권·채무 과부족액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아울러 청산기간중 양국의 수입업자가 개별적인 허가 및 결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리스트(schedule)를 첨부한다. 개별적인 수출입거래가 自國內에서 결제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去來價格 및 關稅率의 결정

구상무역 대상물품의 가격은 국제시세에 따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격경쟁력을 부여하기 위해 달리 합의할 수도 있다.

환매 방식으로 플랜트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생산이 개시되어 제품을 구매할 때까지 장기간을 요하는 만큼 수출계약 시점에서는 장차 일어날 가격의 등락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제품가격을 환매 시점의 국제시세에 연동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아울러 표시통화와 FOB, CIF 등의 가격조건을 명시하고, 만일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구역에서는 이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가격산정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의 금융비용, 구매물품의 판매에 따른 예상손실등을 보전하기 위한 수수료(disagio)를 따로 지급하는 예가 많다.

한편 구상무역의 상대국, 거래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一般特惠關稅(GSP)에 따라 無關稅인지, 아니면 최혜국(MFN) 대우를 받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유리한 적용을 받도록 한다.

다. 證據計定(evidence account)

구상무역 대금의 확실한 결제를 위하여 신용장 거래은행에 증거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예컨대 구상무역방식으로 수입을 한다면 신용장 수익자(수출자)의 명의로 증거계정을 개설하고 신용장 대금을 그리로 입금시킨다. 그후 상대방(수출자)이 대응구매하는 물품의 대금은 증거계정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증거계정은 대금이 건별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청산결제계정과 다르다. 증거계정을 이용하면 구매대상 물품의 제한이 없고 거래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장기간의 友好的인 거래가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라. 정부당국의 認·許可 취득

구상무역 계약의 체결 또는 대상물품의 수출입과 관련, 양국 정부 당국의 허가, 승인, 동의, 면허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의 취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계약체결후 각 당사자가 소정 기간(예: 90일)내에 자기가 책임지고 받아야 할 認·許可를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과거 선진국들은 COCOM(對共產圈 수출조정통제위원회)을 통하여 共產圈에 대한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통제하여 왔으나, 同 기구를 1994년 3월 폐지하였다. 우리나라는 비록 COCOM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1987년 체결된 韓·美協定에 의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 의무를 졌다. 舊 COCOM 회원국들은 신소재, 컴퓨터, 통신장비 등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바세나르 체제⁵⁾를 출범시켰다.

정부의 인·허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거래대상 물품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각종 제재 및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약 내지 보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마. 當事者의 권리와 의무

5) 1996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서 체결된 협정의 정식 명칭은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이다.

거래물품의 품질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해도 적어도 市販될 수 있는(marketable and merchantable) 것이라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정상상태에서 하자 없음을 보증하도록 한다.

만일 품질이 열악하여 제대로 팔릴 수 없는 것이라면 상대방은 이를 수령할 의무가 없으며, 수령하더라도 가격이 자동감액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목적물을 수령하는 당사자는 물품의 인수 직후 그 수량과 품질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합의된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 기간내에 상대방에게 書面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대응구매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응구매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구매처를 다원화하는 등 융통성을 부여한다. 이때 제3자의 대응구매 기간은 原구매기간보다 짧게 할 필요가 있다. 디폴트가 생기더라도 다른 제3자를 수배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다. 自國內 수요가 부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재수출(re-export)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애프터 서비스 제공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같은 상품을 가지고 경쟁하지 못하도록 판매지역의 제한, 競業禁止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거래 상대방이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조건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거래가격의 결정, 계약이행의 감독, 분쟁의 조정등을 수행하는 장치로 당사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調整委員會(ad-hoc committee)를 둘 수 있다.

바. 債務不履行(default)

디폴트 조항은 계약위반, 지급불능, 파산 등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사유를 포함한다. 디폴트에 따른 손해배상은 定額制로 하거나 거래가액의 일정 비율(예컨대 10%)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응구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계약서에 대응구매 비율을 분명히 정하고 대응구매의 대상인 상품과 부수적인 상품, 서비스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違約金(penalty) 지급에 대하여 은행의 보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대응구매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한다.

구상무역에서는 輸入國이 대응구매 물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연체이자의 지급 및 계약조건의 再協商에 관한 특약을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무를 면하도록 한다. 이러한 不可抗力(force majeure) 사유에는 파업, 폭동, 전쟁, 화재, 폭발, 태풍, 홍수 기타 자연재해를 들 수 있는데,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상당한 주의와 비용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야 한다.

사. 紛爭해결방법 및 準據法

사회주의 국가, 개도국들과 거래하는 구상무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구상무역상의 분쟁은 당사자간의 조정위원회(ad-hoc committee)의 결정이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구상무역 계약서에는 통상 중재조항이 들어 있다. 중재계약에서는 仲裁人의 선정, 중재절차규정의 결정, 仲裁判定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구상무역거래의 준거법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中立國의 법률로 하는 예가 많다.

아. 리스크의 回避

구상무역이 기피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거래 성사과정의 길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응구매한 상품의 처분이 용이치 않고, 대응구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조악한 품질의 상품을 국제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거래상대방이 디폴트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선적, 운송, 보관, 보험 등에 많은 비용과 부담이 따르게 된다.

그밖에 당사국 정부의 貿易政策이 바뀌어 수출입 대상품목·서비스에 규제가 가해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수입한도 및 쿼타의 설정 외에 특정 국가로부터의 禁輸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UN이 이라크, 리비아에 經濟制裁조치를 취한 후 이들 나라와의 무역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것이 좋은 예이다.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된다.

덤핑 제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품목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경쟁업체들이 민감한 품목(import-sensitive goods)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 수입하는 것은 덤핑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 쿼타 배정은 거래선의 국적이 아니라 原産地를 기준으로 하므로 거래대상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구상무역의 효용

구상무역은 오늘날 해외시장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유력한 거래수단으로 자리잡았다. 外換不足으로 곤란을 겪는 개도국이나 동구권 여러 나라와 거래를 함에 있어 대안 없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된 것이다. 상대국의 수입억제 품목도 구상무역을 통한다면 효과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특히 구상무역은 우리나라와 제3세계간의 교역에 한하지 않고 北韓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南北韓 교역에 있어서는 統一前 동서독간의 교역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른바 베를린 협정에 의하면 兩獨 중앙은행에 청산결제계정을 설정하고 청산단위(VE: Verrechnungseinheit)의 가치는 서독 마르크(DM)화와 일치시켰다. 즉 서독에서 동독 상품을 반입할 경우 대금결제절차는 먼저 상품 매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경유, 西獨 연방은행(Bundesbank)에 대금을 지불하면 연방은행에서는 청산계정에 해당 금액을 기장한 후 이를 東獨 중앙은행에 통보하게 되며, 동독 중앙은행이 청산계정에 기입하고 해당금액을 동독 마르크화로 환산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식이었다.

西獨은 兩獨間의 교역확대를 위해 對동독 교역지원시책을 시행하였는데, 우선 양독간 교역은 內獨交易(*Innerdeutscher Handel*)이라 하여 단일경제단위 원칙에 입각한 內部去來로 간주하고 동독상품의 반입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동독경제에 대한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청산결제계정을 도입할 당시부터 清算限度의 초과분에 대해 무이자로 무역신용을 공여하는 스윙 제도를 운용하였다. 스윙 한도액은 1949년 16백만 마르크에서 통일 직전 850백만 마르크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1986년에는 동서독간 합의에 의해 스윙 한도액을 동독측의 채무액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동독에 제공되는 스윙 한도는 전년말 현재 청산결제 계정상의 동독측 채무총액의 25%로 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統一前段階에서 북한과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상무역 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로 하고 4대 경험합의서에서 청산거래협정을 체결하였다. 청산결제은행은

남측은 한국수출입은행, 북측은 대성은행이 맡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WTO 체제와는 별도로 특수국가와의 통상협력 증진, 전략물자의 장기·안정적 도입, 南北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구상무역 지원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구상무역으로 들어오는 원자재, 물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연구

아래의 남북경협합의서에서 청산거래 조항을 찾아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청산결제의 대상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거래상품과 한도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당해 연도의 상품거래 시작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의 한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2.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은행 선정과 청산계정 개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

제4조 신용한도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한다.

제5조 결제통화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제6조 청산기간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청산계정의 차액잔고는 해당결제기간

다음해 3월31일까지 청산한다.

제7조 결제절차와 방법

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정한 청산결제은행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일반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

제9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기측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2000년	[북측]	주체 89(2000)년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력사적인 공동선언
	용역거래대금		봉사거래대금
	당해 연도		해당 년도
	청산계정		청산돈자리
	미달러화		미팔라
	청산결제기간		청산결제주기
	자본의 이동		자금이동
	장관급회담		상급회담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